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14호로 2024년 10월 14일 이규선 의원 외 8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여러 상품명 및 광고 등에 무분별한 마약류 용어 사용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경우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에 긍정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저연령층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또한, 상품의 이름에 마약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영등포구 내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나. 실태조사(안 제6조)

다. 사업(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10.17.~2024.10.22.):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최근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편, 상품명에 “마약○○”(예시: 마약베개, 마약잠옷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약”이란 용어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적용하여 “마약류”를 정의함.
- 안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실태조사)는 개선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사업)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
- 안 제8조(위탁)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결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최근 '24년1월2일 일부개정으로 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조항(제8조의2)¹⁾을 신설하여 청소년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예방을 근절하기 위하여 사회도처에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따라서, 우리 구(區)에서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개선계획 ▲실태조사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와 같이한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아울러,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제3항²⁾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1)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약류 중독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제정안은 “상품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제도활동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마약류 사용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